

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6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5. 6. 15
- 다. 상정일자 : 2005. 7. 4

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 : 의회운영위원회 주승현 의원

나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정례회의 년간 회기 일수 조문은 삭제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3조(회기)는 삭제(안 제3조)
-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문찬주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삭제되어 제3조의 회기일수를 년간 35일 이내 조문은 삭제하고, 제2차 정례회는 "매년 12월 5일"에서 "매년 12월 1일"로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 의결"

7. 불임 :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회기) 삭제

제4조(집회) 중 “12월 5일”을 “12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7. 불 임 :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